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보도자료

보도

2019. 2.27.(수) 조간

배포

2019. 2.26.(화)

담당부서

조사기획국

김충우 국장(3145-5550)

최광식 부국장(3145-5560)

제 목 : '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'19년 중점 조사 방향

- 금감원은 '18년 중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선위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(고발·통보)하고, 23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하였음
 - 조사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, 부정거래 사건이 대폭 증가하였음
- '19년에는 무자본 M&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,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

1. '18년 불공정거래 추세 및 금감원의 대응 현황

1 '18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

- ①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('17년 10건 → '18년 27건)한 반면,
 -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('17년 23건 → '18년 18건)

위반유형별 조사실적

(단위 : 건)

구 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전년대비
부정거래	24(12.3%)	13(7.6%)	16(9.3%)	10(7.2%)	27(17.9%)	17
시세조종	53(27.2%)	28(16.3%)	35(20.3%)	23(16.5%)	18(11.9%)	△5
미공개정보	39(20.0%)	35(20.3%)	47(27.3%)	36(25.9%)	36(23.8%)	-
보고의무	43(22.1%)	37(21.5%)	24(14.0%)	20(14.4%)	23(15.2%)	3
기 타	12(6.2%)	12(7.0%)	27(15.7%)	19(13.7%)	8(5.3%)	△11
무조치	24(12.3%)	47(27.3%)	23(13.4%)	31(22.3%)	39(25.8%)	8
합 계	195(100%)	172(100%)	172(100%)	139(100%)	151(100%)	12

* 동일 사건에 2개 이상 위반유형이 있는 경우 중한 위반유형 1건으로 산정

② 상장회사 대주주, 준내부자,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

- 다만,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감소('17년 42명 → '18년 16명)

위반자 신분별 미공개정보 적발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전년대비
내부자	60	49	43	54	26	△28
대주주	4	10	10	4	6	2
임직원	44	36	28	42	16	△26
기타	12	3	5	8	4	△4
준내부자	14	17	36	20	23	3
1차 수령자	37	29	56	23	29	6
합계	111	95	135	97	78	△19

* 긴급조치 사건 제외

③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,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

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검찰이첩 인원 현황

(단위 : 명)

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27	17	-	-	-	11	8

2 불공정거래 조사실적 및 투자자 보호활동

- '18년 중 전년보다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(12건↑) 제재수준이 중한 검찰이첩 비중(3.5%p↑)도 높아지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

조치유형별 조사실적

(단위 : 건)

구 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전년대비
검찰이첩	135(69.2%)	89(51.7%)	104(60.5%)	77(55.4%)	89(58.9%)	12
행정조치	36(18.5%)	36(20.9%)	45(26.2%)	31(22.3%)	23(15.2%)	△8
무조치	24(12.3%)	47(27.3%)	23(13.4%)	31(22.3%)	39(25.8%)	8
합 계	195(100%)	172(100%)	172(100%)	139(100%)	151(100%)	12

* 동일 사건에 2개 이상 조치유형이 있는 경우 중한 조치유형 1건으로 산정

-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체인지 사건 발굴 확대('17년 48건 → '18년 62건)
 - 사회적 관심사항인 가상통화·지방선거 테마주, 보물선 관련주 등과 관련된 투자자 경보*를 신속하게 발표 후 지체없이 기획조사 실시

* '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'('18.2.21.), '보물선 관련주'('18.7.18.) 등

사건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전년대비
자체인지	105(59.3%)	87(57.6%)	81(38.9%)	48(35.3%)	62(44.9%)	14
거래소 통보	72(40.7%)	64(42.4%)	127(61.1%)	88(64.7%)	76(55.1%)	△12
계	177(100%)	151(100%)	208(100%)	136(100%)	138(100%)	2

-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·운영
 -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·교육하는 「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」 실시(26사)

II.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

1 | 해외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례

사건 개요

- ◇ 시세조종 전력자 甲 등 4인은 무자본 M&A 방식으로 상장회사 A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,
 - A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·과장 보도 자료의 작성·배포 등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

【투자 유의사항】

-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동 직후 신규 사업 추진 보도 등으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
 - 신규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및 자금·설비 등 사업 추진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
- 특히, 무자본 M&A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
 - 최대주주·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자세가 바람직

2 |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

사건 개요

- ◇ 상장회사 B사 대표이사 乙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'감사인의 의견 거절' 정보를 취득한 후 동 정보의 공개 전에 B사 주식을 매도
 - 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C사 대표이사 丙은 업무협약 이행 확인 과정에서 상기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공시 전에 B사 주식 매도

【투자 유의사항】

- 상장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
- 상장회사 임직원은 중요정보와 관련된 주식매매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 전일 경우 거래를 삼가할 필요
-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와 계약관계가 있을 경우 준내부자로서 상장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

3 |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

사건 개요

- ◇ 전업투자자 丁은 정치테마주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종목 중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하여
- 「① 선매수 → ② 수백회의 단주매매(1~10주)를 통한 매매유인 및 시세상승 → ③ 전량매도」 방식의 15분 이내 시세조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

【투자 유의사항】

- 지속적인 단주매매로 호가창이 점멸하는 경우 초단기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
- 테마주는 상장회사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추종매수는 투자손실 야기 우려
- 특히,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근거없는 루머·풍문과 시세조종이 연계되는 경우 추종매수에 따른 투자손실 규모가 확대될 소지

Ⅲ. '19년 중점 조사 방향

- ①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
 - 무자본 M&A, 해외투자,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

- ②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
 -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고빈도 매매(HFT)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

- ③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
 -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개연성 발견시 기획조사 실시

- ④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 지속 추진
 -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지속 추진

【불공정거래 신고·제보 안내】

- 인 터 넷 : www.cybercop.or.kr
- 전화번호 : 금감원 콜센터 1332 (4번→3번) 또는 02-3145-5556
- 우편접수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
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(우편번호 : 07321)